|  |  |  |
| --- | --- | --- |
| **부부채무와 연관된 분쟁 사건 심리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법석[2018]2호<부부채무와 연관된 분쟁 사건 심리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이 2018년 1월 8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731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공포하는 바이며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최고인민법원2018년 1월 16일부부채무와 연관된 분쟁 사건을 정확하게 심리하고 각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총칙>,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등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 해석을 제정한다.제1조 부부 쌍방이 공동으로 서명하거나 부부의 일방이 사후에 추인하는 등 공동 의사표시로 부담한 채무는 부부공동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제2조 부부의 일방이 혼인관계 존속기간 내에 개인 명의로 가정 일상생활 수요를 위하여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가 부부공동채무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주장을 지지하여야 한다.제3조 부부의 일방이 혼인관계 존속기간 내에 개인 명의로 가정 일상생활 수요를 초과하여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가 부부공동채무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주장을 지지하지 아니한다. 단, 해당 채무가 부부의 공동 생활, 공동 생산•경영에 사용되었거나 부부 쌍방의 공동 의사표시에 기한 것임을 채권자가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제4조 이 해석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이 해석이 시행된 후, 최고인민법원의 이전 사법해석과 이 해석이 저촉되는 경우 이 해석을 기준으로 한다. |  |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涉及夫妻债务纠纷案件适用法律有关问题的解释**法释〔2018〕2号《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涉及夫妻债务纠纷案件适用法律有关问题的解释》已于2018年1月8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731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18年1月18日起施行。　　最高人民法院 　　2018年1月16日 　　为正确审理涉及夫妻债务纠纷案件，平等保护各方当事人合法权益，根据《中华人民共和国民法总则》、《中华人民共和国婚姻法》、《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等法律规定，制定本解释。 　 第一条 夫妻双方共同签字或者夫妻一方事后追认等共同意思表示所负的债务，应当认定为夫妻共同债务。 　 第二条 夫妻一方在婚姻关系存续期间以个人名义为家庭日常生活需要所负的债务，债权人以属于夫妻共同债务为由主张权利的，人民法院应予支持。 　 第三条 夫妻一方在婚姻关系存续期间以个人名义超出家庭日常生活需要所负的债务，债权人以属于夫妻共同债务为由主张权利的，人民法院不予支持，但债权人能够证明该债务用于夫妻共同生活、共同生产经营或者基于夫妻双方共同意思表示的除外。 　 第四条 本解释自2018年1月18日起施行。 　 本解释施行后，最高人民法院此前作出的相关司法解释与本解释相抵触的，以本解释为准。　 |